



등록번호 : 서울-2-41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상호 또는 법인명: 한국검정(주)

영업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20(역삼동)

소속 국가명: 대한민국

성명 (대표자): 김광태

생년월일: 1969년 3월 10일

전문분야(세부분야): 설계·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등록연월일: 2014년 07월 14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관련 안내 사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해당 기간 이내에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기한 내 미신고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 회사의 상호·소재지·대표자 등과 건설기술인의 입·퇴사 : 3개월 이내
 - 양도·양수 또는 흡수합병 : 30일 이내
 - 휴업·폐업 : 1개월 이내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항상 유지해야 하며, 만약 등록기준 미달 시(특히 건설기술인 퇴사)에는 50일 이내에 보완 신고하여야 합니다(기한 내 미신고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업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됩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www.ekacem.or.kr), 건설기술관리시스템(<http://www.cems.kr>)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사항 변경 알림[한국검정㈜]-대표자

1. 기술심사담당관-10085(2014.6.18.)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원 212-311(2022.1.26.)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귀사의 건설엔지니어링업 세부분야 변경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 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등록내역

상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변경사항			변경등록 연 월 일
		구분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한국검정㈜ 서울-2-41호 110111-001743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20(역삼동) 02)2188-0013	대표자 '22.1.3	송주홍	김광태	' 22.1.26

3. 아울러, 관련 과(기관)은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변경신고서 및 등록증 1부.
2. 건설엔지니어링 등록 관련 안내 사항 1부. 끝.

최영아 시민봉사담당관 2022-01-27 09:49:09



서울특별시



수신자 기술심사담당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강남구청장, 서울21국장, 한국검정주

★주무관 최영아 민원처리2팀장 01/26
한창욱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265 (2022. 1. 27.) 접수)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7918 /전송 02-2133-0829 / younga@seoul.go.kr / 부분공개(6)